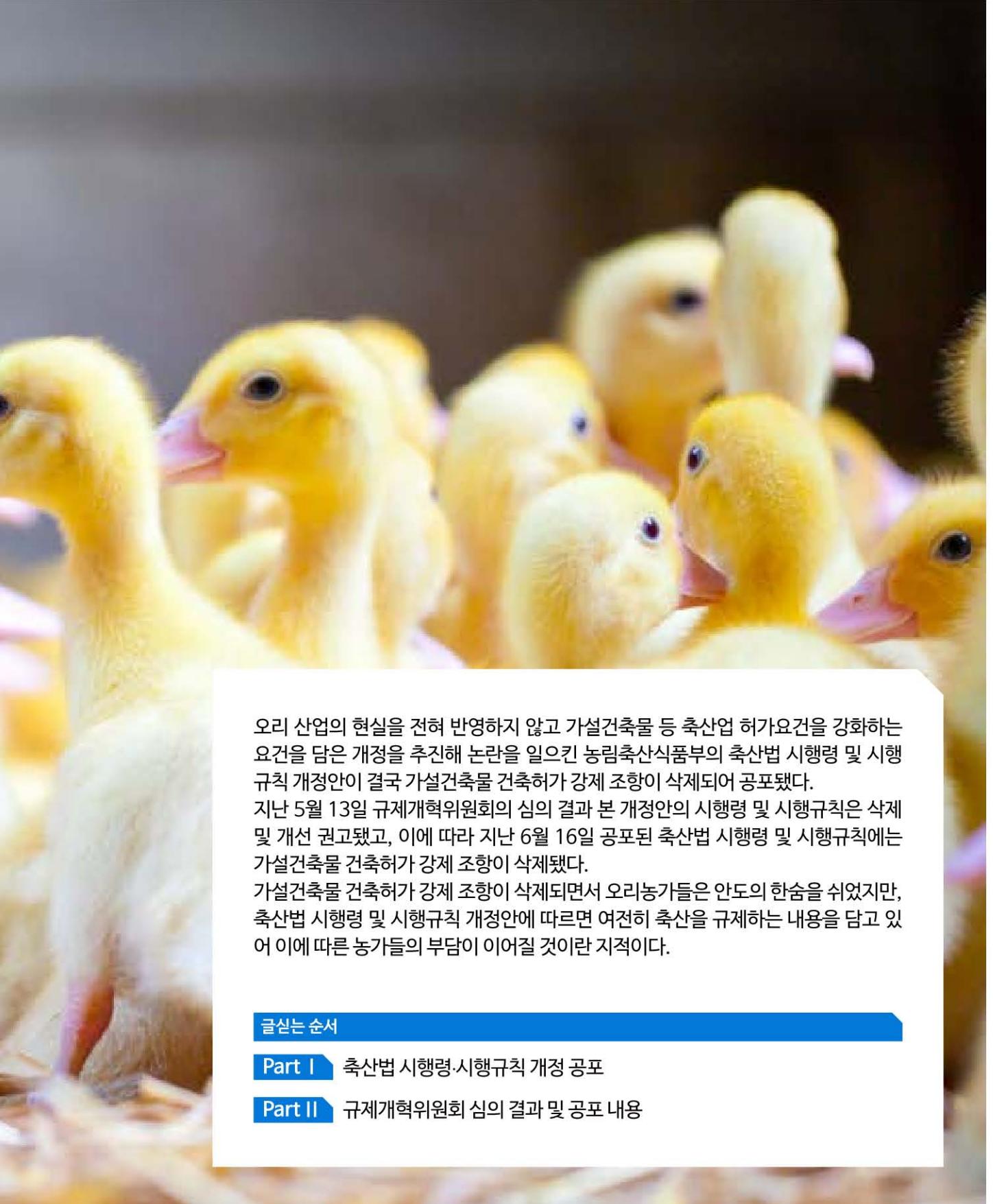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공포

오리협회, 가설건축물 강제조항 삭제 요청
개정안,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강제 조항 삭제 후 공포





오리 산업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가설건축물 등 축산업 허가요건을 강화하는 요건을 담은 개정을 추진해 논란을 일으킨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이 결국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강제 조항이 삭제되어 공포됐다.

지난 5월 13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결과 본 개정안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삭제 및 개선 권고됐고, 이에 따라 지난 6월 16일 공포된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강제 조항이 삭제됐다.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강제 조항이 삭제되면서 오리농가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여전히 축산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에 따른 농가들의 부담이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글싣는 순서

Part I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공포

Part II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및 공포 내용

Part I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공포

축산업의 허가나 등록 요건, 등록자 준수사항이 대폭 강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지난 6월 16일 개정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돼지 사육시설의 경우 악취물질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자연환기 또는 개폐형 벽이 아닌 밀폐형 구조로 설치해야 하며 액비순환시스템(부숙된 액비와 분뇨를 섞어서 악취물질 발생을 줄이는 방식)을 갖추거나 안개분무시설·바이오플터 등의 장비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안이 담겼다. 또한 사육시설의 임시 분뇨보관시설에 적체된 분뇨 높이는 80cm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으며, 연 1회 이상 임시분뇨보관시설의 내부를 완전히 비우고 청소해야하는 안도 담았다.

앞으로 농가에서는 농장에 설치된 퇴비화시설에서 축분을 자원화하는 동안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고 축분이 퇴비화시설 밖으로 흘러 넘치지 않도록 퇴비화

시설 내 축분의 수분 함량은 75% 이하로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리 농가의 경우 오리를 다른 사육시설 등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오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동통로 등의 장비 또는 시설을 구비하고 왕겨 등 깔짚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야 하는 규정도 담겼다.

오리 농장에서 사육시설 간에 오리를 이동시키거나 오리 사육에 필요한 왕겨 등의 깔짚을 야외에 쌓아놓는 경우, 철새 등 야생동물에 접촉되거나 분변 등에 오염되어 사육시설 내부로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질병이 유입될 위험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는 기존 축산업 허가자 외에 신규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나 기존 영업자에 대해서는 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법령 시행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고 언급했다.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Part II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및 공포 내용

규제개혁위원회는 5월 13일 민간위원, 정부위원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식품부가 상정한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먼저 이해관계자들과 정부 부처 의견을 차례로 청취 후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렸다.

이해관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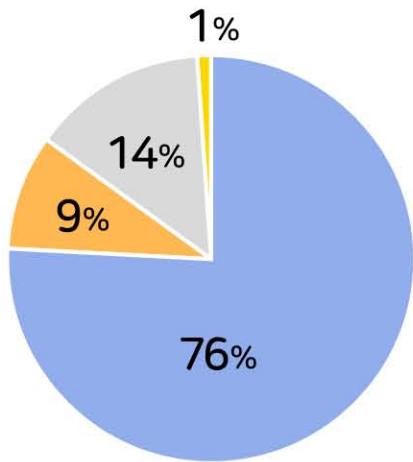
이해관계자는 축산법 시행령 관련, 가설건축물을 금지하는 규제는 축산농가에 막대한 비용부담을 전가하여 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간 정부의 무허가 적법화 사업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포함한 축사를 재정비해왔는데 갑자기 가설건축물을 금지하는 것은 정부정책을 믿은 축산농가의 신뢰에 반한다며, 시행규칙과 관련하여 서도 슬러리 피트 높이 규제는 분뇨를 처리하고 싶어도 처리할 수 없는 농가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설건축물의 종류는 비닐하우스가 기본적이지만, 가설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단열, 환기시설 등 기본적인 기능을 대부분 갖추고 있다며 형태와 상관 없이 모두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를 개선하기 위해 7년 유예기간을 준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며, 건축허가 신고를 받기 위해선 건폐율 규제 등을 따라야 하는데, 준수 시 축사 규모가 줄어들고 수익성이 매우 낮아져 영세성으로 인해 준수 자체가 불가하다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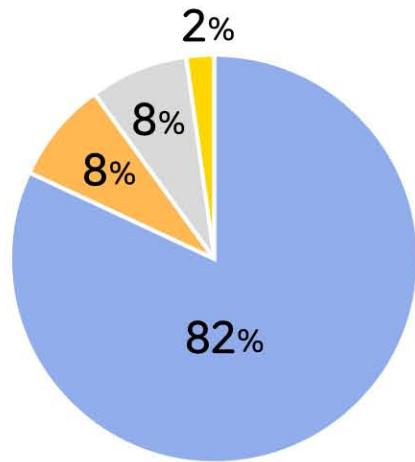
농식품부 및 부처

최근 축산악취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도 여전. 이러한 부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축산농가에 대해 일정부분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러 차례의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쳤고, 이미 유예기간을 7년까지 늘려주었다는 측면에서 규제 수용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특히 가설건축물 규제 도입측면에서 신규 농가는 개선된 형태로 축사를 건설하고 있어 기존 농가에 대한 규제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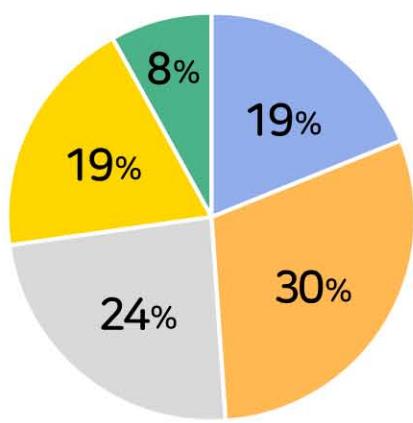
오리농가 축사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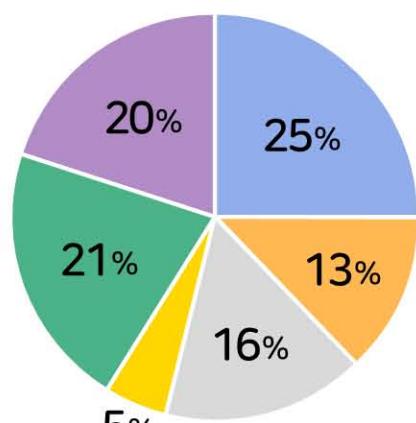
축사 재질



소득 현황



부채 현황



■ 5,000만원 미만
■ 5,000만~8,000만원 미만
■ 8,000만~1억 2,000만원 미만

■ 1억 2,000만~2억 원 미만
■ 2억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1억~2억 원 미만
■ 2억~5억 원 미만
■ 5억 원 이상
■ 없음
■ 무응답



위원회

위원회는 위와 같은 이해관계자들과 부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양한 가설건축물의 형태를 인정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건축법을 따르도록 규제하는 것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이를 위해 건축허가 신고를 받도록 하는 규제는 실태조사 등 부처의 사전 준비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악취저감 장비·시설을 5가지로 규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농식품부 고시로 위임하고 고시에서 규정하는 것이 향후 새로운 장비·시설을 인정할 수 있는 등 보다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건에 대해 대부분 규제가 과도하다 지적하며 규제의

이행가능성, 정책집행을 위한 추가준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사육시설에 대해 건축허가·신고를 받도록 하는 규제는 삭제하고, 악취저감 장비·시설 구비규정은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장비·시설도 인정 가능하도록 수정할 것을 개선권고하였다.

또한, 자율규제 등 행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농가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대안이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할 것을 부대권고하였다.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임시분뇨보관시설 관리기록부 규제는 삭제하고, 내부청소 및 분뇨높이 규제는 지역여건에 따라 유예 가능하도록 조문을 수정·신설 할 것을 개선권고하였다.

시행령

- 축산업 허가 및 등록요건 중 ① 사육시설 등 기준 강화 및
② 악취저감 시설 등 기준 신설
- 특히, 사육시설은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건축물만 인정

심의 결과

- 사육시설 등 기준 강화(건축허가·신고) **삭제**
 - 규제의 이행가능성, 정책집행을 위한 추가준비 필요성 등을 고려
- 악취저감 장비·시설 구비 **개선권고**
 -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장비·시설도 인정 가능하도록 수정
- 농가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대안 검토 **부대권고**

시행규칙

공통사항

- 퇴비화시설 내 미부숙 상태의 축분은 ① 함수율을 75% 이내로 유지
② 교반 및 송풍 등의 조치
-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 가축 이동 또는 출하시, 오염물이 가축에 묻지 않도록 청결 관리

증돈업·가축사육업

임시분뇨 보관시설

- ① 분뇨 높이 80cm 이내 관리
- ② 연 1회 이상 내부 청소
- ③ 관리기록부에 기록·비치 3년 보관

악취저감 장비·시설

- ① 가축사육시 항상 가동
- ② 충진재 등 소모품 주기적 교체
- ③ 기계·장비 등의 오염, 정상 작동여부 점검

심의 결과

- 임시분뇨보관시설 관리기록부 **삭제**
- 내부청소 및 분뇨높이 **개선권고**
 - 지역여건에 따라 유예 가능하도록 조문수정·신설할 것

